

실권예고부 최고서

신주인수권자 귀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9년 05월 0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7조에 의거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기일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7,744주

1. 1주의 액면가액 : 금10,000원

1. 신주식의 발행가액 : 금15,000원

1. 청약 기 일 : 2019. 05. 27.

1. 납 입 기 일 : 2019. 05. 29.

1. 납입을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 장소 : 주식회사 국민은행 성수역종합금융센터 지점

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기일까지로 함

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처 : 본사

2019. 05. 07.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1나길 5, 402(성수동1가, 헤이그라운드)

대표이사 김 정 태

